

사설향로표지관리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세부기준(제18조제2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간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설향로표지관리원에 대해서는 사설향로표지의 소유자나 위탁관리업자에게 해당 사설향로표지관리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.

2. 개별기준

위 반 행 위	근거 법조문	업무정지처분기준	
		1차 위반	2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9조제6항, 제13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시 부과한 허가조건 중 사설향로표지의 관리와 관련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22조제1항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
나. 법 제17조에 따라 향로표지의 소등·유실·침몰·무너짐·위치이동 등의 사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22조제1항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
다. 사설향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없도록 시설향로표지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	법 제22조제1항	업무정지 2개월	업무정지 3개월
라.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 향로표지 장비·용품등의 경우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향로표지 장비·용품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	법 제22조제1항	업무정지 2개월	업무정지 3개월